

‘고적’의 탄생-일제 시기 문화재의 제도화와 식민주의*

오 영 찬**

목 차

- I. 머리말
- II. 전근대의 「고적」
- III. 근대 역사학과 ‘유적 유물’
- IV. 조선총독부와 ‘고적’
- V. ‘고적’의 제도화
- VI. 맺음말

국문초록 | 이 논문은 일제시기 근대적인 문화재 개념의 성립과 그 제도화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전근대 「고적」이라는 용어의 근대적 변용 과정을 통해 일제시기 문화재와 그에 상응하는 개념의 성립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새로운 ‘고적’이 지니는 근대적 성격을 고찰하고 그 제도화에 내재된 식민주의의 함의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조선왕조실록』과 각종 지리지에 나타나는 전근대 「고적」의 용례를 통해 「고적」의 개념과 가치의 부여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조선왕조실록』에서 「고적」은 예전의 자취라는 축자적 의미에 충실하면서 유적, 유물, 자연물, 옛 일 등 다양한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 F-2018S1A5A2A01028705)

** 吳永贊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ycoh@ewha.ac.kr

투고일: 2023. 10. 31. 심사완료일: 2023. 12. 7. 게재확정일: 2023. 12. 19.

DOI URL: <http://dx.doi.org/10.17792/kcs.2023.45..109>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오늘날 문화재와는 개념적으로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신증 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한 조선시대 지리지에서 「고적」의 선별에는 현존의 실제정보라는 유서적 가치에 입각한 역사적 장소성이 영향을 미쳤다.

20세기 들어 근대 학문의 등장과 함께 도입된 새로운 개념에 주목하였다. 1906년 이마니시 류(今西龍)의 답사 보고서에서는 아직 근대 문화재로서의 ‘고적’ 개념은 등장하지 않지만, 이마니시가 조사의 대상을 선정할 때 유물과 유적의 실재성, 즉 물리적으로 남겨진 흔적을 중시했다는 점은 주목된다.

근대적 문화재로서 ‘고적’의 개념은 조선총독부 주도로 식민지 조사의 일환으로 유적과 유물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도입되고 정착되었다. 그 시점은 1914년경이다. 일본에서 문화재를 통칭하는 ‘사적’이 근대 국민국가 성립 과정에서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고양이나 국민 정체성의 확립에 적극 활용된 반면, 식민지 조선에서는 역사가 배제된 ‘고적’이 의도적으로 채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고적’ 개념을 토대로 1916년 식민지 문화재 법령으로 「고적급유물보존규칙」이 제정되었다. 등록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이 법령은 모든 유적과 유물을 대장에 등록한 후 현상에 따라 보존 방법의 완급을 강구하는 것으로 구상되었지만, 본래의 취지대로 시행되지는 못했다. 오히려 식민지 조선에서 문화재 법령은 보존과 보호보다 식민지 조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고적 조사를 뒷받침하였다. 일제 시기 조선총독부에 의해 수립된 문화재 정책은 식민주의적 시각에서 도입되고 제도화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핵심어 | 고적, 사적, 문화재, 조선총독부, 식민주의

I. 머리말

근대적 제도로서의 문화재는 국민국가의 산물이다. 근대 국민국가는 자신의 정체성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과거로부터 전래된 장소나 물질 자료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또 보존과 보호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침으로써 새로운 정체성을 수립하는 매개로 적극 활용하였다. 이러한 면모는 19세기 중반 이후 국가 및 민족 정체성과 관련하여 국가 문화재를 지정하고 정부의 관리 대상을 선정한 프랑스의 문화재 정책¹⁾이나, 메이지유신 이후 廢佛毀釋

으로 대규모 불교문화재의 파괴를 겪은 이후 「古器旧物保存方」을 시작으로 일본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법령 제정 과정에서도 확인된다.²⁾

20세기 초 식민 지배를 거친 한국의 경우는 문화재 개념의 도입과 그 제도화에 있어서는 이와 상이한 궤적을 갖는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일제 시기에 문화재 내지 이에 상응하는 개념으로는 ‘고적’이 널리 사용되었다. 조선총독부에서 제정한 최초의 문화재 법령은 1916년 제정된 「고적급유물 보존규칙」이었고, 이에 의거하여 ‘고적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고적조사사업’이 실시되었다. 조선총독부에서는 다이쇼 및 쇼와 연간에 『고적조사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1915년부터 1933년까지 모두 15권의 『조선고적도보』를 간행하였다. 한편 1922년에는 조선총독부 학무국에 고적조사과가 신설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식민지 조선에서는 문화재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고적’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그런데 해방 이후에는 이러한 ‘고적’이라는 용어가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게 된다. ‘고적’이라는 용어와 개념은 언제 어떻게 상용화되었으며 여기에는 어떤 역사적 성격이 내재된 것일까.

물론 전근대에도 「고적」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였다.³⁾ 하지만 전근대의 「고적」과 근대적인 문화재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된 ‘고적’ 간에는 명확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본고에서는 양자가 지니는 단절성에 착목하여, ‘고적’의 의도적인 도입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그 제도화 과정인 일제의 식민지 문화재 정책이 지니는 식민주의적 성격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최근 일제 시기 식민지 문화재 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⁴⁾

-
- 1) 신상철, 「프랑스 문화재 보호정책의 역사와 세계유산 등재 제도의 의미」, 『미술사학』 34, 2017, 143~147쪽.
 - 2) 高木博志, 『近代天皇制の文化史的研究』, 校倉書房, 1997.
齋藤智志, 『近代日本の史蹟保存事業とアカデミズム』, 法政大学出版局, 2015.
김용철, 「근대 일본의 문화재 보호제도와 관련 법령」, 『미술자료』 92, 2017.
 - 3) 본고에서는 전근대와 근대 사이의 개념적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전근대에는 「고적」, 근대 이후에는 ‘고적’이라고 표기한다.
 - 4) 金志宣, 「조선총독부 문화재 정책의 변화와 특성-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고려대

본고는 이에 크게 힘입으면서, 「고적」이라는 용어의 근대적 변용 과정과 그 제도화에 내재된 식민주의의 함의에 주목하였다.

먼저, 일제 시기 문화재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상용되었던 ‘고적’이라는 개념이 언제 어떻게 성립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조선왕조실록』과 각종 지리지에 나타나는 전근대 시기 「고적」의 용례를 검토하고, 이러한 「고적」의 개념과 가치의 부여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근대 학문의 등장과 함께 새롭게 도입된 ‘유물 유적’의 개념을 검토하였다. 근대 역사학의 학문적 관심과 대상이 정립되는 모습을 1906년 이마니시 류(今西龍)의 경주 답사 보고서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후 근대적 문화재의 개념으로 등장하는 ‘고적’의 개념에 주목하였는데, ‘고적’이라는 개념의 도입과 정착 과정이 조선총독부의 주도적 역할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새로이 도입된 ‘고적’ 개념을 토대로 1916년 식민지 조선에서 문화재 제도와 법령이 정비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여기서 나타나는 식민지 문화재 정책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본고에서는 ‘고적’이라는 근대적 개념의 도입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상을 통해 조선총독부 문화재 정책에 배태된 식민주의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선학 제현의 질정을 구한다.

석사학위논문, 2008.

이순자,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경인문화사, 2009.

全東園, 「韓國文化財形成過程に関する史的考察-植民地期「朝鮮文化財」研究の成立と言説空間の形成」, 東京外国語大学 博士学位論文, 2017.

김중수, 「한국 문화재 제도 형성 연구」, 충남대 박사학위논문, 2019.

오춘영, 「한국 근대 ‘문화재’ 인식의 형성과 변용」, 충북대 박사학위논문, 2020.

II. 전근대의 「고적」

앞서 언급하였듯이 식민지 조선에서는 고적조사보고서, 고적조사위원회, 고적조사사업, 고적급유물보존규칙 등 ‘고적’이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이 개념은 후일 근대적 제도로서의 문화재에 근접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⁵⁾ 일제 시기 상용되던 ‘고적’이라는 용어는 그 이전 조선시대에도 존재하였을까. 만약 조선시대에도 사용되는 용어였다면, 근대 이후 시기의 용례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⁶⁾

조선시대에 「고적」이라는 용어가 존재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우선 『조선왕조실록』을 살펴보았다. 『조선왕조실록』에서 「고적」을 전산 검색한 결과, 25회 이상의 용례가 확인된다.⁷⁾ 먼저 『關西勝覽』에 단군의 유적이 文化縣古跡으로 기재되었다는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성종실록』 15권, 성종 3년 2월 6일, 계유), 「고적」이 ‘옛 유적’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정조가 列聖의 御筆과 御製 등을 「고적」이라고 지칭하거나(『정조실록』 5권, 정조 2년, 2월 8일, 기해), 龜城君 李濬의 집안에 전해지고 있는 「고적」을 조사하라는 경우처럼(『정조실록』 27권, 정조 13년 2월 16일, 계묘), 오늘날 ‘유물’의 개념으로 이해되는 용례도 있다. 그러나 고래로부터 전해지는 자연물까지 포함되는 넓은 의미로도 사용되기도 하며(『순조실록』 10권, 순조 7년, 10월

5) ‘문화재’는 독일어를 ‘Kulturgüter’를 번역한 단어로, 바이마르공화국 이후 근대화를 지향한 독일이 국민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문화도 국가의 재산으로서 국가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일본은 1949년 참의원 문화위원회 문화소위원회에서 「문화재 보존과 다양한 이름의 법률」을 검토하면서 ‘문화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서 법적 용어로 채택되었다(박정희, 「문화재보호의 법리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31, 한국법학회, 2008, 79~80쪽).

6) 고적이라는 용어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조선시대의 경우 「고적」, 일제 식민지기는 ‘고적’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7) 오춘영, 앞의 논문, 2020, 24~29쪽.

22일, 경인), 단순히 ‘옛 일’을 「고적」이라고 한 경우도 있다(『세종실록』 57권, 세종 14년 8월 26일, 임자). 따라서 『조선왕조실록』에서 「고적」은 예전의 자취라는 축자적 의미에 충실하면서 유적, 유물, 자연물, 옛 일 등 폭넓은 의미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선왕조실록』에서는 「史蹟」이나 「遺蹟」이라는 단어도 많지는 않지만 확인된다. 여기서 「사적」은 오늘날과 같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유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역사적 기록이나 사건’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중종실록』 36권, 중종14년 5월 27일, 기미; 『정조실록』 54권, 정조24년, 윤4월 4일, 병진; 『고종실록』 27권, 고종 27년 7월 11일, 기묘). 「유적」의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건축물이나 그 흔적’을 뜻하기도 하지만(『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1월 19일 임인), 단순히 ‘남긴 흔적’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성종실록』 163권, 성종15년, 2월 29일 병술; 『정조실록』 29권, 정조14년, 3월 16일 병신). 이처럼 『조선왕조실록』에서는 「고적」, 「사적」, 「유적」이라는 용어가 모두 확인된다. 하지만 오늘날의 용례처럼 근대적 제도로서의 문화재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편찬된 여러 지리지에는 「고적」조가 설정되었다. 이러한 지리지의 「고적」조에는 어떤 대상들이 등재되어 있으며, 그러한 대상들이 선별되어 등재된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자. 1454년 편찬된 『世宗實錄』 地理志에서는 아직 「고적」조가 등장하지 않다가, 1530년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 각 지방에 소재한 고적에 관한 내용을 다룬 「古蹟」가 설정되고 있다.⁸⁾ 이는 명의 『大明一統志』를 참고한 것이다.⁹⁾ 본고에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 중 고대 신라 유적이 다수 전해지는 경주 지역을 대상으로 수록된 대상 목록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다음은 『신증동국여지승

8) 오춘영, 위의 논문, 2020, 29쪽.

9) 이태진, 「《東國輿地勝覽》 편찬의 歷史的 性格」, 『진단학보』 46-47, 1979, 255쪽.

람』권21 경상도 경주부에는 71건이 등재되어 있다.

辰韓六部, 楊山蘿井, 闕英, 金城井, 雛羅井, 始林, 金城, 月城, 滿月城, 明活城, 南山城, 關門城, 永昌宮, 瑤石宮, 黃鶴樓, 琴松亭, 鮑石亭, 瞻星臺, 九聖臺, 阿珍浦, 書出池, 雁鴨池, 星浮山, 余那山, 鳳生巖, 月明巷, 悅朴嶺, 玉笛, 玉帶, 井田, 四節遊宅, 財買谷, 月精橋, 鬼橋, 白雲梁, 上書莊, 奉德寺鍾, 曇巖寺, 天官寺, 皇龍寺, 迦葉宴坐石, 四天王寺, 奉聖寺, 永興寺, 興輪寺, 神元寺, 昌林寺, 南山寺, 坤元寺北淵, 王家藪, 臨關郡, 商城郡, 東安郡, 音汗火縣, 約章縣, 東畿停, 南畿停, 北畿停, 莫耶停, 省法伊部曲, 八助部曲, 大庖部曲, 大昌部曲, 南安谷部曲, 根谷部曲, 桃界部曲, 虎鳴部曲, 虎村部曲, 下西知木柵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고적조에 등재된 대상들은 유서적 가치에 입각한 역사적 장소성에 주안하여 선정되었는데, 유서적 가치란 역사상의 사적(事蹟)이나 위인의 유서에서 나오는 가치를 일컫는다.¹⁰⁾ 이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 옛 문헌에 전해지는 역사상의 사건이나 전설, 그리고 전승과 결부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특징은 현존의 실재 여부가 별로 중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신증동국여지승람』 고적조에 수록된 대상들을 살펴보면, 이 책이 편찬될 당시에도 이미 존재하지 않는 대상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대상의 실제성보다는, 문헌 기록이나 전승과 결부된 역사적 장소성이 오히려 더 중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辰韓六部, 楊山蘿井, 闕英, 金城井, 雛羅井, 始林 등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등 초기 기록에 등장하는 명칭이며, 요석궁이나 서출지, 안압지 등은 독특한 설화가 깃들여 있는 장소이다. 사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曇巖寺, 天官寺, 皇龍寺, 迦葉宴坐石, 四天王寺, 奉聖寺, 永興寺, 興輪寺, 神元寺, 昌林寺, 南山寺, 坤元寺처럼 ‘今廢’되어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거나, 명칭만 남아 있어서 위치를 알

10) 齋藤智志, 앞의 책, 2015, 14쪽.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유서’란 ‘예로부터 전하여 내려오는 까닭과 내력’을 일컫는다.

수 없는 사찰도 다수 수록되었다. 실제의 존재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명칭의 전승이 이루어졌으면 옛 자취로서 「고적」에 포함시켰던 것이다. 유물의 경우에도 실제 여부가 그리 중요했던 것은 아니어서, 玉笛, 玉帶처럼 실물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전승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 포함시켰다. 봉덕사종처럼 당시 현존하는 것도 있었으나, 옛 기록이나 전승 등에 의거한 유서적 가치에 의거하여 수록된 것이지, 현존 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양상은 다음에 논할 일제시기 ‘고적’이나 근대적 개념의 문화재와는 구분되는 주목되는 특징이다. 후자에서는 실재하지 않는 유적과 유물이 결코 대상이 되지 못했으며, 오로지 실재성이 필요조건이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오히려 과거로부터 전승되면서 실재하는 대상의 경우, 고적 조가 아니라 성곽, 관방, 궁실, 누정, 佛宇, 祠廟, 陵墓조에 기재되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사찰의 경우에도 당시 현존하던 불국사, 감은사, 영묘사, 기림사, 분황사 등은 佛宇조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한편, 경주의 경우에는 신라시대 유적과 유물에만 국한되지 않고, 고려시대도 시기적으로 포함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 점은 식민지 시기 이후의 양상과는 차이를 보이는 점이다. 경주의 「고적」에 정중부와 관련된 坤元寺北淵이 포함되며, 조선 후기에는 없어진 전대의 행정구역인 臨關郡, 商城郡, 東安郡, 音汁火縣, 約章縣이나, 東畿停 南畿停, 北畿停, 莫耶停, 그리고 고려시대 부곡인 省法伊部曲, 八助部曲, 大庖部曲, 大昌部曲, 南安谷部曲, 根谷部曲, 桃界部曲, 虎鳴部曲, 虎村部曲 등이 옛 자취이라는 의미에서 「고적」조에 포함되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고적」조에서 확인되는 이러한 특징은 1757년~1765년에 각 읍에서 편찬한 읍지를 모은 전국 지방지인 『輿地圖書』나, 1885년 증보 간행된 경주의 읍지인 『東京雜記』 등에 수록된 경주 일대의 대상 목록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되고 있다. 아울러 조선시대의 「고적」에서 보이는 이러한 개념적 양상은 대한제국 시기까지 이어진다. 1908년 『대한매일신보』에 1908년 2월 26일부터 6월 20일까지 약 4개월간 연재된 「대한고적」의

경우, 특정한 이야기와 결합되어 있는 지역의 명소를 소개하고 있고 있다. 여기서도 실제성보다는 유서적 가치가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전통시대 「고적」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¹¹⁾

Ⅲ. 근대 역사학과 ‘유적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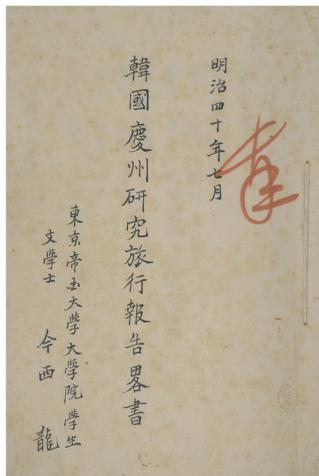
전통시대 통용되던 「고적」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건축사학, 역사학을 비롯한 근대 학문의 아카데미즘이 등장함에 따라 개념과 의미의 변용을 맞게 된다. 다음 장에서 다루게 될 건축사학자 세키노 다다시가 이러한 국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와 함께 주목되는 또 다른 인물은 역사학자 이마니시 류(今西龍, 1875-1932)이다. 이 장에서 근대 역사학의 대상으로서 ‘유물 유적’이 등장하는 과정을 이마니시의 답사 보고서를 통해 살펴볼도록 하자.

1903년 도쿄제국대학 사학과를 졸업한 이마니시 류는 대학원 재학 중이던 1906년 9월 6일에서 10월 5일까지 한반도로 건너와서 경주의 여러 유적을 답사하였다. 그는 조선사를 전공한 최초의 대학원생이자 1926년 경성제국대학 교수로 부임하여 관학으로서의 조선사학을 정립한 학자였다. 이마니시가 경주를 답사했던 시점은 1907년 9월인데, 바로 1905년 을사늑약에 이어 1907년 7월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된 직후이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에는 이마니시가 제출한 답사 보고가 남아 있다. 1907년 7월 10일 제출한 『한국 경주 연구 여행 보고 약서(略書)』(이하 ‘여행 보고서’라 칭함)인데, 1932년 이마니시의 사후에 그가 남긴 여러 수고들과 함께 전해진다(<도판-1>).¹²⁾ 이마니시의 여행 보고서에는 경주 지역의

11) 「대한고적」, 『대한매일신문』, 1908년 2월 26일~6월 20일.

12)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L002-021-001-001, 『한국 경주 연구 여행 보고 略書』.

여러 유적과 유물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는 근대 역사학의 아카데미즘을 기반으로 답사의 장소이자 조사 연구의 대상을 선정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도판-1〉 한국 경주 연구 여행 보고 약서 (L002-021-001-001)

여행 보고서는 모두 다섯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1 경주의 지리, 제2 現今慶州府城과 그 근교, 제3 고분, 제4 유물 유적, 제5 신라의 도성, 제6 한국의 현상 등이다. 이 중 제3 고분과 제4 유물 유적 편에는 이마니시가 경주에서 방문한 유적들과 함께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하고 있던 유물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1906~7년 당시 이마니시가 파악하고 있던 유적과 유물은 나름의 학술적 가치가 부여된 것으로, 앞서 전통시대 「고적」과 비교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중에는 이마니시가 원고지에 육필로 작성한 「경주 보고」라는 명칭의 보고서 초고도 함께 존재한다(L002-022-001, 「경주 보고」).

본다면 개념과 분류, 그리고 가치 부여 등의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엿볼 수 있다.

다음은 제4 유물 유적편의 목록이다.

- 1 월성, 반월성
- 2 남산성
- 3 관문성 또는 만리성
- 4 금성 만월성
- 5 명활성
- 6 부산성
- 7 진한육부
- 8 안압지, 임해진
- 9 시립, 유지, 요석궁, 월정교지(?)¹³⁾
- 10 양산 알영정, 오릉
- 11 포석정
- 12 침성대, 봉덕사종
- 13 서악리 : 다수의 고분
- 14 김유신묘, 괴릉, 태종왕릉
- 15 석탑
- 16 옥적
- 17 분황사, 화쟁국사비, 백률사 산사 석불
- 18 통도사, 통도사 南 고비
- 19 신라시대 諸寺 : 담엄사, 천관사, 사천왕사, 황룡사, 남산사, 영교사 등
- 19 남산, 북산(금강산), 낭산 : 토기편, 석관 등 매물
- 20 기타의 유물 : 석사자, 석불 여러점
- 21 수집한 유물 : 토기 약 40점, 토기편 20여점, 고와 및 전 파편 100여점

13) 월정교지의 경우에만 이마니시가 물음표 표시를 하였다.

이마니시가 제시한 ‘유물 유적’은 다음과 같은데, 위의 목록에 나타난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마니시의 여행 보고서에서는 어디에도 「고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 대신에 ‘유물 유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모두 21건의 유물 유적이 제시되어 있다. 이 중 20과 21의 경우 유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1~19에서는 별도로 유물이나 유적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12 봉덕사 종, 15 석탑, 16 옥적, 17 석불, 18 고비는 오늘날 기준에 따르면 유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이마니시는 실재성을 기준으로 대상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 점은 조선시대 「고적」과 구분되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마니시의 목록에서는 ‘유물 유적’이라는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과 고분, 사찰 등 당시 물리적으로 남겨진 것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어쩌면 오늘날 문화재의 개념에 근접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먼저 제시된 것이 성인데, 비교적 유구의 존재가 명확하게 확인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 월성 반월성, 2 남산성, 3 관문성 또는 만리성, 4 금성 만월성, 등은 성벽을 통해 성의 존재가 용이하게 인지되었으며, 다만 5 명활성은 이마니시가 존재는 알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실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6 부산성의 경우 『삼국사기』에는 자세한 기록이 없지만, 『여지승람』, 『동경지』를 통해 위치를 비정하고 있다. 9 신라시대 사찰 들 중에는 담업사, 천관사, 사천왕사, 황룡사, 남산사, 영교사 등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찰은 전승과 유물의 출토를 통해 당시 사찰의 위치가 실제로 비정되어 존재가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¹⁴⁾

14) 4장의 ‘유적 유물’과는 별도로 3장에서 ‘고분’을 다루고 있다. 서악동 고분과 황남리 고분 등을 통해 신라의 고분을 대형(5.60척~30척 내외), 중형(30~15척 내외), 소형(15척 이하)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적석목곽분이나 횡혈석식실분 등 묘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아직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유물의 경우에도 실제성이 중요한 기준이었다. 예컨대 16 옥적의 경우에도 유물에 담긴 전설에 의거하여 설정된 것이 아니라, 당시 남아 있는 유물이 제시되어 있으며, 11 포석정의 경우에도 전설이 반영된 실제 유구가 더 중요시되었다. 20 기타의 유물과 21 수집한 유물을 설정한 것은 흥미롭다. 20 기타의 유물에서는 석사자, 석불 여러 점을 들고 있으며, 21 수집한 유물의 경우 토기 약 40점, 토기편 20여점, 고와 및 전 파편 100여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19세기 말 20세기 초 일본 고고학의 성과를 반영하여 토기와 와전 등을 유물의 범주 속에 포함시키고 있다.

넷째, 이마니시가 제시하고 있는 경주의 유물 유적은 시기적으로 신라시대의 것에 국한되어 있는 점이 또한 특징적이다. 신라 이후의 고려시대 것은 배제되어 있는데, 이 점은 조선시대의 고적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는 이마니시의 개인적인 관심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경주에 대한 학술적인 가치는 신라시대의 국한되는 일종의 폐쇄성을 띠었는데 이러한 유습은 오늘날까지 강고하게 유지되는 측면이 있다.

다섯째,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서 현존하는 유적이 중시되었다. 초기 기록의 설화에 등장하면서 전승로 전해지고 있던 실제 유적인 알영정, 나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역사학자인 이마니시의 학문적 관심이 반영된 것인데, 당시에는 이마니시가 『삼국사기』 초기기록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아직 부정론의 입장에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7 진한육부의 경우에도 『삼국유사』와 『동경지』 등에 의거하여 진한 육부의 위치를 비정하고 있다. 따라서 『삼국사기』 초기기록에 대한 사료 비판 없이 기재된 유적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마니시가 파악한 이러한 유물과 유적 목록의 출처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이마니시가 부산성의 위치를 『여지승람』과 『동경지』를 통해 파악했다는 언급¹⁵⁾과 아울러 세키노 다다시(關野貞)의 1902년 조사 결과물인 『한국 건축조사보고』¹⁶⁾를 통해 봉덕사 종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아 미루어

집작할 수 있다. 그리고 보고서 말미에는 경주 현지의 답사 과정에서 경무소와 관아의 도움을 상시적으로 받은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마니시는 『삼국사기』와 『여지승람』, 『동경지』 등의 고문헌과 세키노 다다시의 『韓國建築調查報告』, 그리고 경무소와 관아 등을 통해 당시로는 최대한의 현지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러한 제반 정보를 기반으로, 근대 역사학의 아카데미즘에 의해 형성된 나름의 관점으로 대상을 선별하였다. 그의 선별 기준은 유적과 유적의 실재성, 즉 물리적으로 남겨진 흔적이었으며, 재래의 유서적 가치보다는 근대적 합리성으로 치장된 아카데미즘에 의한 학술적 가치에 치중하였다. ‘유적과 유물’에 내재된 스토리는 폄하되면서 배제되었고, 실증주의에 입각한 합리적 가치만 강조되었다. 결국 일본에서 이러한 역사학의 아카데미즘은 국체론이나 민족주의와 결합한 반면, 식민지 조선에서는 식민주의와 적극 결합하면서 식민사학으로 귀결되었다.

IV. 조선총독부와 ‘고적’

이마니시 류에 앞서 식민지 조선에서 새로운 ‘고적’을 창안하는데 기여한 인물은 도쿄제국대학 건축학과 교수인 건축사학자 세키노 다다시(關野貞)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는 제국일본과 식민지 권력기관인 조선총독부와 긴밀한 관련을 맺었다. 세키노는 1902년 도쿄제국대학 공과대학장 다쓰노 긴코(辰野金吾)의 명을 받고 서울, 경주, 개성 등 역대 수도의 고건축물을 조사하였는데, 당시 러일전쟁을 앞두고 戰場 내지 보급지가 될 지역에 대해 전용 가능한 건축물의 상황과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차원에서 의뢰되었던 것이

15) 『여지승람』은 1930년 증보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이며, 『동경지』는 1845년 성원목이 증보한 『동경잡지』로 보인다.

16) 關野貞, 『韓國建築調查報告』, 東京帝國大學 工科大学 學術報告 第6號, 1904.

다.17) 그 결과물이 앞서 언급한 『한국건축조사보고』이다. 이어 1909년 다시 세키노 다다시는 대한제국 탁지부 차관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郎)의 의뢰로 고건축물을 개조하여 활용하기 전에 관련 자료를 사전에 남기기 위한 조사를 시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찰 등도 관청 건물로 개축하여 활용할 것을 염두에 두고 함께 조사되었다. 세키노 다다시의 조사사업은 1910년부터 내무부 지방국 사사과(社寺課)를 거쳐, 8월 강제병합과 함께 내무부 지방국 제1과의 업무로 분장되었으며, 1914년까지 한반도 전역의 고건축물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그의 조사는 순수한 학술적 성격보다는 고건축물의 활용도를 파악하기 위한 실용적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었으며, 건축물 활용 상황에 대한 조사를 기본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사찰과 경내 및 주변의 석탑 등 불교문화재로, 그리고 석실 등의 구조물을 지닌 고분에 대한 조사로 확장되었다. 한편 세키노 다다시의 고건축 조사와는 별개로, 학무국 편찬과에서는 교과서 편찬을 위한 사료조사를 명목으로 도리이 류조(鳥居龍藏), 이마니시 류, 구로이타 가쓰미(黑板勝美)에게도 조사를 의뢰하였다. 도리이 류조는 1910년부터 1915년까지 ‘반도 유사(有史) 이전(以前)의 인종과 문화’ 조사를, 이마니시 류는 1913~14년 세키노 다다시의 조사팀에 합류하여 한반도 북부와 만주 일대를 공동으로 조사하였다. 구로이타 가쓰미는 1915년 ‘일본 상대사를 반도 상대사의 유구학적 연구에 의해 밝히는 것’을 명목으로 한반도 남부지방에서 임나일본부 유적을 찾는 시도를 하였다.

상기 조사자들은 근대적 의미의 문화재 개념으로 ‘고적’이라는 용어를 아직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초기 조사를 주도하였던 세키노 다다시의 개인적인 저술에서도 ‘고적’이라는 용어가 흔히 사용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1910년 12월 ‘御苑事務局 評議員 工學博士 關野貞’ 명의로 제출된 보고서의 제목이 『朝鮮遺蹟調査略報告』였으며, 1912년 조선총독부에 제출된 조사

17) 大橋敏博, 「韓國における文化財政策システムの成立と展開」, 『文化政策論叢』 8, 島根縣立大學, 2004, 175쪽

으로 ‘고적조사(古蹟調査)’나 ‘고적조사보고(古蹟調査報告)’ 등의 용어는 식민지 전 기간을 걸쳐 상용되었다. 조선총독부 주도로 식민지 조사의 일환으로 문화재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고적’ 개념이 도입되고 정착되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종래 세키노 다다시, 도리이 류조, 이마니시 류, 구로이타 가쓰미 등 제국대학 교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식민지 조사 성과를 기반으로 1916년 「고적금융물보존규칙」(제령 제6호, 이하 「보존규칙」이라 칭함)이 제정되고, 총독부 관료와 제국대학 교수를 중심으로 고적조사위원회가 조직되었으며 이후 고적조사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보존규칙」에서는 ‘고적’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고적은 “패총·석기·골각기류를 포함한 토지 및 수혈 등의 선사유적, 고분·도성·궁전·성책·궐문(闕門)·교통로·역참·봉수·관부·사우·묘단·사찰·도요 등의 유지 및 전적(戰蹟) 기타의 사실(史實)에 관한 유적”으로 규정되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이쇼 5년도 고적조사보고』에 실린 고적조사계획에도 언급되어 있는데, 고적 조사의 대상을 ①선사유적, ②고분, ③사적, ④고건축물, ⑤금석 기타 고고물, ⑥고문서로 제시하고 있다. 이 중 ①선사유적, ②고분, ③사적, ④고건축물이 바로 「보존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적에 해당된다. 이는 1916년 이전까지 이루어진 조사 상황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선사유적은 도리이 류조의 조사에서, 고분과 고건축물은 세키노 다다시의 조사에서, 사적은 주로 이마니시 류의 조사 내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세키노 다다시의 조사 대상이 주로 고건축물과 고분을 중심으로 한 것이라면, 「보존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적은 고고학 유적과 역사 유적, 고건축물까지 포괄하는 비교적 넓은 범주였다.

이후 고적의 개념의 고고학 유적으로 축소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예컨대 1931년 설립된 조선고적연구회에서는 ‘평양과 경주를 중심으로 한 고분’만을 조사 및 연구대상으로 하는 것에서 엿볼 수 있듯이, 고적은 주로 고분을 지칭하였다. 한편 1933년 반포된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제령 제

6호, 이하 「보존령」이라 칭함)에서 ‘고적’은 문화재 일반을 가리키는 개념이 아니라 특별한 가치가 인정된 지정문화재의 일종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즉 보존령에서 고적은 “패총·고분·사지·성지·요지·기타 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고고학 유적 중에서 특별히 중요도가 인정된 유적을 지칭한 것이다. 고건축물은 보물의 범주에 들어감으로써 고적에서 제외되었고, 「보존규칙」 단계에서 ‘사실(史實)에 관한 유적’들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처럼 ‘고적’ 개념은 시기에 따라 고고학 유적을 지칭하거나 유적 중 지정문화재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유동적으로 사용되었지만, 식민지 전시기에 걸쳐 문화재 일반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던 것에는 크게 변함이 없었다.

그렇다면 식민지 조선에서 통일되어 사용되었던 ‘고적’이라는 용어는 당시 일본 내지에서도 일반화되었던 것일까. 조선에서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의 모범이 된 일본의 법령은 1919년 4월 제정된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호법」과 1929년 제정된 「국보보존법」인데, 조선의 「보존령」은 이 두 법을 적절히 조합하여 조문이 구성되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조선과 달리 ‘고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시종 ‘사적(史蹟)’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²⁰⁾

1920년 1월 결정된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요목」에서 ‘사적’의 사례로 다음 11 가지를 들고 있다. 1. 도성적(都城跡), 궁적(宮跡), 행궁, 기타 황실과 관계가 깊은 사적(史跡), 2. 사사적(社寺跡), 제사 신앙에 관한 사적으로 중요한 것, 3. 고분, 저명한 인물의 묘(墓)와 비(碑), 4. 고성적(古城跡), 성채(城砦), 방루(防壘), 고전장(古戰場), 국군청적(國郡廳跡), 기타 교육학예에 관계 깊은 사적, 5. 성묘(聖廟), 향학(鄉學), 번학(藩學), 문고(文庫) 또는 이들의 적(跡),

20) 19세기 후반 이래 일본에서는 ‘구적(旧蹟)’이라는 용어와 함께 ‘고적(古蹟)’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고적은 國府蹟, 城蹟, 古戰場, 宅蹟, 廢寺蹟 등을 지칭하였는데, 실재한 인공물의 흔적인 고고학적 유적과 민속학적 민간 전승이 함께 공존하였다. 森本和男, 『文化財の社會史』, 彩流社, 2010, 364~370쪽.

기타 교육학예에 관계 깊은 사적, 6. 낙원적(樂園跡), 자비원적(慈悲院跡), 기타 사회사업에 관계있는 사적, 7. 고궐적(古關跡), 일리총(一里塚), 요적(窯跡), 시장적(市場跡), 기타 산업교통토목 등에 관한 중요한 사적, 8. 유서있는 구택(舊宅), 원지(苑池), 정천(井泉), 수석(樹石) 종류, 9. 패총, 유물포함지, 신통석(神籠石), 기타 인류학 및 고고학상 중요한 유적, 10. 외국 및 외국인과 관계있는 사적, 11 중요한 전설지(傳說地) 등이다.²¹⁾ 여기서 사적은 주로 ‘국가의 발전’과 사회의 ‘진보’와 관련된 역사의 유산으로 규정되었는데, 이러한 사적 개념은 구로이타 가쓰미(黑板勝美)의 의견서에서 기본적인 골격을 확인할 수 있다. 구로이타는 일본에서 사적보존운동을 주도하면서 사학계의 증지를 모아 「史蹟遺物保存に關する意見書」를 제출하였으며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협회에서 활동하였고, 조선에서도 「보존규칙」의 제정에 관여하였을 뿐 아니라 고적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한 인물이다.²²⁾ 그는 사적을 ‘과거 인간 활동이 지상에 남긴 흔적 중에서 역사 미술 등의 연구자료로 필요한 것이며, 무엇보다도 학술성의 의의를 지닌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²³⁾ 여기에 역사적 환경과 전승지를 포함시키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데, ‘인간 활동의 무대가 되고 그것과 밀접히 관련되는 천연 상태’와 ‘역사적 진실은 아니지만 역사적인 전승을 수반하여 국민들이 믿고 감화를 받는’ 전승지도 사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전승지는 사학적 가치와는 별개로 국민들 사이에 위대한 감화력을 가짐으로써 국민의 풍교도덕에 영향을 미치므로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구로이타가 주장한 사적의 개념이 식민지 조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을까. 사적이든 고적이든 당초에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체이지만, 이를 특정의 문화재 제도 하에서 등록 또는 지정 등을 통해 중요도를

21) 内川隆志, 「整備の現状と整備史」, 『史跡整備と博物館』, 雄山閣, 2006, 36쪽.

22) 이성시, 「黑板勝美를 통해 본 식민지와 역사학」, 『한국문화』 23, 1999, 251~253쪽.

23) 黑板勝美, 「史蹟遺物に關する意見書」, 『史學雜誌』 23-5, 1912.

부여하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행위이다. 더구나 국가 권력 내지 조선총독부와 같은 식민지 권력 주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지극히 정치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일본에서도 사적은 러일전쟁 이후 충효 절의, 무사도 등을 고양하기 위하여 천왕의 성적(聖蹟)을 비롯하여 충신, 무장(武將)의 유업(遺業)이나 고전장(古戰場), 위인의 무덤이나 집 등을 현창하는데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러한 일본의 사적 개념이 식민지 조선에서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²⁴⁾ 이러한 역사적 맥락과 관련하여 1910년대 전후 신채호, 박은식 등을 필두로 하는 일련의 민족주의 역사학의 흐름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민족의 기원인 단군에 대한 숭배가 강조되는가 하면, 전쟁 영웅으로서 을지문덕, 최영, 이순신 등의 전기를 통해 과거의 영광이 신화화되었다. 바로 이들의 작업은 민족의 기원을 추구하거나 민족의 위기에 서 나라를 구한 영웅을 역사적으로 재조명하는 것, 민족의 독립을 유지했던 시대인 고대 역사를 서사적으로 복원하는 것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²⁵⁾ 이러한 서사적이고 교훈적이며 신화적인 역사학을 통한 민족의식의 고양에 대한 위기감에 의해, 조선총독부는 조선사 편수사업을 적극 나서게 되었으며, 그러한 전승과 직간접적으로 결부된 역사적 유적 또한 식민지 조선에서 배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제도화된 문화재로서의 고적은 패총, 고분, 사지, 성지, 요지 등으로 제한되었는데, 역사적 서사가 배제된 물질자료 중심의 고고학과 긴밀히 관련되었다. 일본에서 사적은 먼저 황실 관련 유적을 들고 있으며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 심지어 전승지까지 포함시킴으로써, 근대 국민국가 성립 과정에서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고양이나 국민 정체성의 확립에 적극 활용한 반면, 식민지 조선에서는 그러

24) 台灣, 樺太, 朝鮮, 滿洲國에서 전개된 일본의 문화재 행정에서 '古跡'과 '史跡'이 미묘하게 나누어지며, 조선과 만주국에서는 일본의 가치관에 준거한 偉人이나 偉績의 현창과 결부된 사적이 없었다고 지적한 연구가 있다(森本和男, 앞의 책, 2010, 594~595쪽).

25) 정수진, 『무형문화재의 탄생』, 역사비평사, 2008, 81~83쪽.

한 지향을 배제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식민지 조선에서는 역사가 갖든 ‘사적’보다는 역사가 배제된 ‘고적’이 채택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근대적 문화재로서 ‘고적’의 개념은 조선총독부 주도로 식민지 조사의 일환으로 유적과 유물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도입되고 정착되었다. 일본에서 문화재를 통칭하는 ‘사적’이 근대 국민국가 성립 과정에서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고양이나 국민 정체성의 확립에 적극 활용된 반면, 식민지 조선에서는 역사가 배제된 ‘고적’이 의도적으로 채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V. ‘고적’의 제도화

1916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고적급유물보존규칙」(이하 「보존규칙」이라 칭함)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일본 최초의 사적 보호법으로 일본에 비해 3년이나 앞서 시행된 것이라고 한다.²⁶⁾ 「보존규칙」은 모두 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조는 고적 및 유물의 개념, 제2조는 고적 및 유물 중 등록할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한 등록과 등록 내용, 제3조는 고적 및 유물의 발견 시 경찰서장에게 신고, 제4조는 등록 시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 제5조는 현상 변경·이전·수선·처분 등의 행위 시 경찰서장을 거쳐 조선총독의 허가, 제6조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길 경우 경찰서장은 조선총독에게 보고, 제7조는 매장물 발견 신고 시 경찰서장은 경찰총장을 거쳐 조선총독에게 보고, 제8조는 이의 위반 시 벌금 또는 과료 규정 등이다.

이 규칙은 제정 과정에서 이미 조선총독부 내 내무부에서도 이견이 제시된 바 있었다. 사유권의 제한에 관한 건을 府令에서 정한 점, 고적 및 유물의

26) 藤田亮策, 「朝鮮古蹟調査」, 『朝鮮學論考』, 1963, 78쪽.

발견 신고 및 등록 물건의 취체, 변경 보고 등이 경찰서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점, 사찰이 가진 탑비불상불구 등에 관해서는 이미 사찰령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 시 고적조사위원회를 거쳐 총독의 허가를 요하는 점 등이다.²⁷⁾ 이 중 일부는 1933년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이하 「보존령」이라 칭함) 단계에서 보완을 거치게 된다.

「보존규칙」의 근간은 고적 및 유물에 대한 등록 제도이다. 이는 구로이타 가쓰미의 제안을 대폭 따른 것인데, 일본에서 1897년 제정된 「고사사보존법」에 대한 보완적 성격을 띠는 것이었다. 「고사사보존법」에서 중요보호건 조물과 국보로 지정된 것만 보호하고, 비지정 물건은 경시하여 파괴와 산일이 초래된다는 점이 비판을 받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독일식의 ‘대장법’이 제안되었다.²⁸⁾ ‘대장법’은 특정 건에 대한 지정이나 선택 없이 모든 사적과 유물을 대장에 등록한 후, 사적과 유물의 현상에 따라 보존 방법의 완급을 강구하는 방식이다. 총 8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보존규칙」에서 6개 조항이 ‘대장법’의 취지로 구상된 등록과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보아, 「보존규칙」은 등록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의도로 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보존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적 및 유물의 등록 제도는 어느 정도 실효성 있게 시행되었을까.

다음은 1924년에 작성된 『고적급유물등록대장』에 실린 1~193번까지 등록된 고적 및 유물의 현황이다.²⁹⁾

27) 朝鮮總督府, 『朝鮮ニ於ケル博物館事業ト古蹟調査事業史』, 1925.

28) 黑板勝美, 앞의 논문, 1912, 901쪽.

29)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F021-001, 「古蹟及遺物登錄臺帳」.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F027-001, 「登錄物件」에 의하면, 1929년 4월 공주읍내 석조(石槽)가 제196호로 등록된 것이 확인된다.

표1 등록된 고적 및 유물 현황(1924년)

석 탑	불 상	석 비	당 간 지 주	석 각	종	전 탑	부 도	석 당	석 등	석 수	석 조	석 빙 고	침 성 대	기 타	총
64	41	32	17	7	5	4	3	3	3	3	3	2	2	4	193

총 193건 중 철불 2건, 동종 5건, 전탑 4건, 기타 중 철부 1점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석조 유물이 차지하고 있는 점이 이례적이다. 예컨대 41건의 불상 중에도 39건이 석조불이고 철불은 2건에 불과하다.³⁰⁾

세키노 다다시는 1909년부터 1915년까지 한반도 전역의 고건축물과 고분을 조사하여 보존 여부에 따라 갑·을·병·정의 네 등급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그 중 1909년부터 1912년까지 4년간 조사 건수만 하더라도 1,450건에 달하며, 이 중 보존이 필요하다고 분류한 갑·을이 579건에 달한다.³¹⁾ 하지만 이러한 조사 내용 중 극히 일부만 등록되었으며, 여타 고적조사 사업에서 이루어진 조사 내용도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모든 고적이나 유물을 등록한다는 등록 제도의 본래 취지를 무색케 한다. 그리고 사원 소유의 건축물이나 보물은 「보존규칙」이 아닌 「사찰령」의 대상이었고, 객사·누정(樓亭)·성문 등은 국유재산으로서 토목국이 관할한다는 이유로 「보존규칙」의 등록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1913년 경주고적보존회의 설립에 의해 조사 및 보존활동이 비교적 활발히 펼쳐졌던 분황사, 불국사, 석굴암 등 경주의 유적이나 유물도 등록되지 않았다.³²⁾ 따라서 모든 문화재를 대장

30) 등록된 고적 및 유물은 사유지 내에 존재한 석탑, 석비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언급이 있다(『朝鮮古蹟調査及保存沿革』, 『朝鮮』1931-12, 1931).

31) 金玖淑, 「建築史家關野貞の韓國歴史的建造物の調査保存について」, 『日本建築學會大會學術講演梗概集(近畿)』, 2005, 406쪽.

32) 李明善, 「朝鮮古蹟調査と‘古蹟及遺物保存規則’について」, 『日本建築學會計劃系論文

에 등록한 후 완급의 상황에 따라 보존 방법을 강구한다는 ‘대장법’은 식민지 조선의 현실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등록제도는 문화재 제도의 경제적, 사회적 기반이 극히 취약했던 식민지에서는 더욱이 시행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친 후, 1933년 「보존령」에서는 다시 등급 구분에 의한 선별 보호로 전환되었다.

「보존규칙」의 특징 중 하나는 등록 제도를 포함한 문화재 행정에 경찰서가 깊숙이 개입하였다는 점이다. 고적 및 유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 지역의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등록된 경우에도 해당 경찰서장에게 대장의 등본을 송부하도록 되어 있었다. 매장물의 경우도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경찰총장을 거쳐 조선총독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고적조사위원회규정에는 현지 조사에 종사하는 고적조사위원은 조사 과정에서 고적 소재지에 헌병 또는 경찰관의 입회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민지 시기 전 과정을 걸쳐 경찰기구가 비대했을 뿐 아니라 행정경찰의 영역 또한 넓었는데, 경찰은 범죄 예방 검거와 치안 유지에 그치지 않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위생·공장건축사화·보건·영업 등 행정 사무에 대한 단속 및 인허가도 맡고 있었다. 대륙 침략 이후에는 경제 통제노무 동원·수송 등도 맡아 식민지의 생활 전반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였다.³³⁾

고적 및 유물의 등록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보존규칙」의 제정 의도가 식민지 조선에서 문화재 보호와 보존보다는 유적 유물의 파악에 중점을 둔 문화재의 데이터베이스화를 도모한 것이라고도 한다.³⁴⁾ 일본에서 시행되던 「사사보존법」이나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 등에서는 보조금 지급이나 관리비용 지원 등 보존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 지원 방안 등이 명시되어

集』 557, 2002, 331쪽.

廣瀬繁明, 「朝鮮の建築·古蹟調査とその後の‘文化財’保護」, 『考古學史研究』 10, 2003, 65~66쪽.

33) 김민철, 「식민통치와 경찰」, 『역사비평』 26, 1994, 208~209쪽.

34)李明善, 앞의 논문, 2002, 331~332쪽.

있는데 반해, 「보존규칙」은 주로 등록에 관한 제반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등록된 물건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이전·수선·처분 또는 보존에 영향을 미칠 만한 시설을 하는 경우 경찰서장을 거쳐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을 뿐이다. 이는 문화재 보존을 위한 실질적인 법적 뒷받침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조선총독부에서 고적의 조사와 보존 업무, 특히 고사사(古社寺) 보존 업무는 당초 분리되어 있었는데, 1921년 고적조사과가 신설되기 이전에 고사사 보존 업무는 총독부박물관이 아닌 학부국 종교과의 소관이었으며, 총독부박물관으로 관련 업무가 이관된 이후에도 중요한 보존 공사는 박물관의 의뢰를 받아 토목부가 시공하였다. 고적조사과 직제에서도 고사사 보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와타나베 아키라(渡邊彰) 1명 뿐이었다.³⁵⁾ 이러한 미비점 때문에 고적조사위원회가 건축물에는 관심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막대한 비용을 요하는 건축물의 보존사업이나 수리 등은 뒤로 미루는 경향이 강하며, 일본 고사사보존회 분국(分局)을 조선에 설치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게 되었다.³⁶⁾

「보존규칙」에서는 동산문화재의 관리도 방기되었다. 수집, 구입된 박물관 진열품만 총독부박물관의 중점 관리 대상이 될 뿐이었고, 조선에 존재하는 여타 동산문화재는 등록 및 보존 관리 대상에서 거의 제외되어 있었다. 국외 유출 대상에서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이 점은 자국 문화재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제정된 1929년 「국보보존법」, 국보로 지정되지 않은 미술품을 대상으로 한 1933년 「중요미술품 등의 보존에 관한 법률」 등 일본에서의 입법 조치와는 간극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에서 새롭게 도입한 ‘고적’ 개념을 토대로 1916년 식민지 문화재 법령으로 「고적규칙」이 제정되었다. 등록 제도를 근간으로

35) 朝鮮總督府, 앞의 책, 1925.

36) 藤島雅一路, 「最近除去されたる城門を以ひ朝鮮古建造物保存問題に及ぶ」, 『朝鮮と建築』 1928-8, 1928, 2~6쪽; 李明善, 앞의 논문, 2002, 331쪽.

하는 이 법령은 모든 유적과 유물을 대장에 등록한 후 현상에 따라 보존 방법의 완급을 강구하는 것으로 구상되었지만, 본래의 취지대로 시행되지는 못했다. 오히려 식민지 조선에서 문화재 법령은 보존과 보호보다 식민지 조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고적 조사를 뒷받침하였다. 일제 시기 조선총독부에 의해 수립된 문화재 정책은 식민주의적 시각에서 도입되고 제도화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Ⅶ. 맺음말

이상으로 일제시기 근대적인 문화재 개념의 성립과 그 제도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고적」이라는 용어의 근대적 변용 과정을 통해 일제시기 문화재와 그에 상응하는 개념이 성립되는 과정을 추적하였고, 그리고 새로운 ‘고적’이 지니는 근대적 성격을 고찰함으로써 그 제도화에 내재된 식민주의의 함의를 검토하였다. 앞서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여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조선왕조실록』과 각종 지리지에 나타나는 전근대 「고적」의 용례를 통해 「고적」의 개념과 가치의 부여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조선왕조실록』에서 「고적」은 예전의 자취라는 축자적 의미에 충실하면서 유적, 유물, 자연물, 옛 일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오늘날 문화재와는 개념적으로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한 조선시대 지리지에서 「고적」의 선별에는 현존의 실재성보다는 유서적 가치에 입각한 역사적 장소성이 영향을 미쳤다.

20세기 들어 근대 학문의 등장과 함께 도입된 새로운 개념에 주목하였다. 1906년 이마니시 류(今西龍)의 여행 보고서에서는 아직 근대 문화재로서의 ‘고적’ 개념은 등장하지 않지만, 이마니시는 조사의 대상을 선정할 때 유물과 유적의 실재성, 즉 물리적으로 남겨진 흔적을 중시하였다. 건축학, 고고학,

미술사학 등 근대 학문의 아카데미즘에 의해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새롭게 부각되었으며, 특히 역사학의 아카데미즘의 경우, 일본에서는 국체론이나 민족주의와 결합한 반면, 식민지 조선에서는 식민주의와 적극 결합하면서 식민사학으로 귀결되었다.

근대적 문화재로서 ‘고적’의 개념은 조선총독부 주도로 식민지 조사의 일환으로 유적과 유물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도입되고 정착되었다. 그 시점은 1914년경이다. 일본에서 문화재를 통칭하는 ‘사적’이 근대 국민국가 성립 과정에서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고양이나 국민 정체성의 확립에 적극적으로 활용된 반면, 식민지 조선에서는 역사가 배제된 ‘고적’이 의도적으로 채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고적’ 개념을 토대로 1916년 식민지 문화재 법령으로 「고적급유물보존규칙」이 제정되었다. 등록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이 법령은 모든 유적과 유물을 대장에 등록한 후 현상에 따라 보존 방법의 완급을 강구하는 것으로 구상되었지만, 본래의 취지대로 시행되지는 못했다. 오히려 식민지 조선에서 문화재 법령은 보존과 보호보다 식민지 조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고적 조사를 뒷받침하였다. 일제 시기 조선총독부에 의해 수립된 문화재 정책은 식민주의적 시각에서 도입되고 제도화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이태진, 「《東國輿地勝覽》 편찬의 歷史的 性格」, 『진단학보』46-47, 진단학회, 1979.
- 김민철, 「식민통치와 경찰」, 『역사비평』 26, 역사문제연구소, 1994.
- 이성시, 「黑板勝美를 통해 본 식민지와 역사학」, 『한국문화』 23,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99.
- 정수진, 『무형문화재의 탄생』, 역사비평사, 2008.
- 박정희, 「문화재보호의 법리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31, 한국법학회, 2008.
- 金志宣, 「조선총독부 문화재 정책의 변화와 특성-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8.
- 이순자,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경인문화사, 2009.
- 신상철, 「프랑스 문화재 보호정책의 역사와 세계유산 등재 제도의 의미」, 『미술사학』 34,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17.
- 김용철, 「근대 일본의 문화재 보호제도와 관련 법령」, 『미술자료』 92, 국립중앙박물관, 2017.
- 김중수, 「한국 문화재 제도 형성 연구」, 충남대 박사학위논문, 2019.
- 오춘영, 「한국 근대 ‘문화재’ 인식의 형성과 변용」, 충북대 박사학위논문, 2020.
- 關野貞, 『韓國建築調査報告』, 東京帝國大學 工科大学 學術報告 第6號, 1904.
- 黑板勝美, 「史蹟遺物に關する意見書」, 『史學雜誌』 23-5, 東京大學文學部內史學會, 1912.
- 朝鮮總督府, 『朝鮮古蹟調査略報告』, 1914.
- 朝鮮總督府, 『朝鮮ニ於ケル博物館事業ト古蹟調査事業史』, 1925.
- 藤島雅一路, 「最近除去されたる城門を弔ひ朝鮮古建造物保存問題に及ぶ」, 『朝鮮と建築』 1928-8, 朝鮮建築會, 1928.
- 藤田亮策, 「朝鮮古蹟調査」, 『朝鮮學論考』, 藤田先生記念事業會, 1963.
- 高木博志, 『近代天皇制の文化史的研究』, 校倉書房, 1997.
- 李明善, 「朝鮮古蹟調査と‘古蹟及遺物保存規則’について」, 『日本建築學會計劃系論文集』 557, 2002.

- 廣瀬繁明, 「朝鮮の建築・古蹟調査とその後の‘文化財’保護」, 『考古學史研究』
10, 京都木曜クラブ, 2003.
- 大橋敏博, 「韓國における文化財政策システムの成立と展開」, 『文化政策論
叢』8, 島根縣立大學, 2004.
- 金玟淑, 「建築史家關野貞の韓國歴史的建造物の調査・保存について」, 『日本
建築學會大會學術講演梗概集(近畿)』, 日本建築學會, 2005.
- 内川隆志, 「整備の現状と整備史」, 『史跡整備と博物館』, 雄山閣, 2006.
- 森本和男, 『文化財の社會史』, 彩流社, 2010.
- 齋藤智志, 『近代日本の史蹟保存事業とアカデミズム』, 法政大学出版局, 2015.
- 全東園, 「韓国文化財形成過程に関する史的考察-植民地期「朝鮮文化財」研
究の成立と言説空間の形成」, 東京外国語大学 博士学位論文, 2017.

THE INVENTION OF ‘*GOJEOK* (OLD RELICS)’ : INSTITUTIONALIZATION
OF CULTURAL PROPERTIES DURING JAPANESE COLONIAL PERIOD IN
KOREA

OH YOUNGCHAN (OH, YOUNG CHAN)

This paper examines the establishment of the modern concept of cultural properties and their institutionalization in Korea. For this, I reviewed the process by which the concept of cultural properties and their equivalents was established through the modern transformation of the term ‘Gojeok (Old Relics)’, and the implications of colonialism inherent in its institutionalizatio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ccording to the usage of 「Gojeok (Old Relics)」 in *Joseonwangjosillok*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and various geographical books in the Joseon dynasty, 「Gojeok」 were often used to mean ‘old traces’. The selection of the lists of 「Gojeok」 depended on the historical placeness rather than the reality of existence.

In the 20th century, new concepts were introduced with the emergence of modern scholarship. Although the concept of ‘Gojeok’ as modern cultural property did not yet appear in Imanishi Ryu’s field trip report in 1906, it attracted attention in that Imanishi emphasized the real existence of relics, that is, the physical traces left behind, when selecting the subject of survey.

The concept of ‘Gojeok’ was introduced in the process of conducting surveys of archaeological sites and old architecture as part of the colonial investigation led by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That point was around 1914. In Japan, ‘Sajeok (historic relics)’ was actively used to promote the ideology of the emperor system and build national identity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modern nation, while in colonial Joseon, ‘Gojeok’ that excluded history was intentionally adopted.

In 1916, the Act of 『Rules for Preserving Old Relics and Artifacts』 was enacted based on the concept of ‘Gojeok’. The Act was focused on the archaeological and architectural surveys as part of colonial investigation rather than preservation and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in colonial Joseon. It is worth noting that the cultural properties policy established by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as introduced and institutionalized from a colonial perspective.

Key Words : *Gojeok* (Old Relics), *Sajeok* (Historic Relics), Cultural Property,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Colonialism